

三國史記의 服飾研究 II
—色服의 衣服을 中心으로—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Costume the Sumptuary Laws of Silla
in Sam-Guk-Sa-Ki(三國史記)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4. 短衣
I. 緒 論	5. 裙, 褙
II. 衣服名	6. 袴
1. 表衣	7. 裳
2. 內衣	III. 結 論
3. 半臂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 and to identify costumes described in the sumptuary laws of Silla in Sam Guk Sa Ki(三國史記).

Conclusions and summary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yo ui* was an outer robe. It was worn by man and woman from all classes.

Nai ui is considered as a kind of long inner garment worn under the outer garment.

Ban bi is a short-sleeved garment worn over a jacket. Both sexes wore this garment but it was restricted to the upper class.

Dan ui, a short garment, is a kind of jacket. Although records on this garment appear only in the items of woman's garments, it is considered that all people wore this garment since it was basic garment for the people of Silla.

Bai was the *bai ja*. It was a kind of woman's over-coat with wide sleeves.

이 논문은 1997년도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Dang is considered as a kind of woman's outer robe originally made of *ra*. The upper class women entitled to wear the *bai* and the *dang*.

Women wore skirts. They had two kinds of skirts : an outer skirt and an inner skirt. However, women of four *du pum* did not have an inner skirt.

Trousers were worn by all people.

Names of *ban bi*, *bai*, and *dang* were derived from T'ang China. These garments with their origins in T'ang China were used by the upper class people of Silla. They used those garments as a means of differentiating their social status from the lower class.

In brief, garments were used to distinguish people from social class and rank, and sex.

I. 緒 論

三國史記에는 服飾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있어 우리 나라 古代服飾 研究의 貴重한 資料가 되고 있다.

그러나 三國史記의 服飾研究는 李龍範의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과 金東旭의 興德王 服飾禁制의 研究 논문 등이 있을 뿐이다.

李龍範의 研究는 몇가지 外來品을 고찰한 것이고 金東旭의 研究는 新羅末期 服飾再構를 中心으로 한 것으로서 이 研究들은 新羅服飾 研究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만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服飾 관련 기록은 아직까지 그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衣服이나 織物, 服色, 또는 服飾附屬品과 그 외의 服飾관련 材料 등에 대한 研究도 어렵게 만든 要因이 되기도 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三國史記 色服의 衣服名을 中心으로 하여 新羅의 이 衣服들은 무슨 옷들이었는지 찾는 것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本 論文中에서 다루고자 하는 衣服은 表衣, 半臂, 內衣, 短衣, 襟襟, 袴, 裳이다.

II. 衣服名

1. 表 衣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表衣는 眞骨階級에서부터 平人階級에 이르기까지의 男女가 모두 착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才物譜 衣部에 袍,

表衣之稱이라 하였고 다른 문헌에도 袍子를 옷옷이라 번역한 것이 발견된다¹⁾. 表衣란 겉옷으로서 袍를 의미한다는 것은 分明하다. 그러나 袍의 形態나 種類는 대단히 많기 때문에 新羅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表衣가 어떤 종류와 모양의 袍인지는 알 수 없다. 衫도 表衣種類에 들어간다. 또 襦裙 차림일 때는 襦와 裙도 겉옷이 된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表衣가 袍를 지칭하는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계급과 男女 共通으로 사용한 한 가지 모양의 袍였는지도 不分明하거나와 平人階級과 骨品階級 사이에 同一한 表衣가 사용되었는지도 分明히 알 수 없다. 그리고 表衣의 用途도 分明치 않아 禮服用이었는지 燕居用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것의 用途에 따라서 唐制를 따른 袍일 수도 있고 國俗을 따른 袍일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알 수 없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新羅人의 袍가 만약 燕居用이었다면 高麗圖經에서 볼 수 있듯이 國制였을 것이다. 그러나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新羅服飾名은 中國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新羅男子의 表衣는 中國衣名인 圓領이었었을 가능성이 많다. 男子의 冠이 幞頭一色이므로 表衣는 소위 袍下에 加襟한 襦袍(衫)即 圓領이었을 것이다.

男子의 表衣가 연거용이 아니고 公服이나 外出用이었다면 唐制度를 따른 袍였을 것은 三國史記 여러 곳에서 이러한 推定을 可能하도록 만든다.

眞德王 三年(649 A.D.)에 이미 中朝衣冠을 입기 시작하였으며 文武王 四年(664 A.D.)에는 婦人服 역시 中朝衣裳을 따르도록 下敎하였다.

이 뿐만 아니고 三國史記 眞德王 四年(650 A.

1) 譯語 類解補 28, 同文類解上, 漢清文鑑, p. 328.

D.) 條에 보면 眞骨로서 벼슬을 가진 사람에게는 牙笏을 잡도록 하였다. 文武王 五年에는 新羅王에게 紫衣一襲과 腰帶一條, 聖德王 二十三年에는 唐玄宗이 錦袍金帶를, 또한 聖德王 二十九年에는 唐玄宗이 紫袍와 綿細帶를 王族志滿에게 주었다. 同王 三十二年(733 A.D.)에는 王姪 志廉이 唐에 謝恩하러 파견되었을 때 唐玄宗은 王에게 紫羅縵袍를 보냈다. 同王 三十三年에도 唐皇帝는 賀正使 大臣 金端丹에게 衛尉少卿 벼슬을 주고 緋襪袍와 平漫銀帶를 주었다. 景德王 二年(743 A.D.)에도 王弟를 唐 파견하여 賀正하였을 때 唐玄宗은 左清道率府員外長史 벼슬을 주고 綠袍와 銀帶를 하사하였다. 元聖王 二年(786 A.D.)과 景文王 五年(865 A.D.)에 唐帝는 계속하여 新羅王과 王妃에게 衣服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宰相들에게도 衣服을 하사하였고 景文王 五年에 唐帝가 新羅王에게 보낸 선물에는 王太子의 의복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보면 新羅婦人の 表衣도 袍 종류였다고 가정할 때 新羅婦人の 表衣는 唐代 婦人袍의 一種이었을 가능성도 크다.

新羅婦人の 表衣가 무슨 옷이었을까 생각해 보기 위하여 唐代 婦人服을 보아야 할 必要가 있다. 唐代의 婦人도 여러 종류의 袍를 사용하였으므로 新羅婦人도 袍를 表衣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新羅婦人の 袍가 新羅男子의 袍와 同制였을 것이라 假定은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表衣가 燕居用일 때에만 그럴 可能性이 있다. 新羅婦人 服飾品目에 이미 唐代 婦人 服飾品名이 상당히 많이 流入된 것을 감안한다면 新羅婦人の 表衣는 唐나라 婦人들에게 流行하였던 소위 大袖袍나 大袖衫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흥매경과 흥무경은 興德王 服飾禁制의 表衣는 袍일 것이라 가정하고 그것은 近代 朝鮮 僧侶의 長衫과 彷彿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서 僧侶의 長衫은 羅, 麗代表衣의 遺制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하였다.

表衣란 말은 겉옷 또는 外衣란 의미의 총칭이

지 옷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上流階級과 下流階級의 表衣는 同一한 옷이 아닐 수도 있고 또한 男女의 表衣도 다른 옷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行事 또는 季節에 사용되는 表衣냐에 따라서도 表衣란 이름 아래에 얼마든지 다른 옷이 있을 수 있다.

소위 우리가 袍 또는 衫이라고 말하는 범위에 는 많은 이름을 가진 衣服이 表衣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어떤 이름의 袍가 新羅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表衣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만약 新羅男女의 表衣가 國制였다면 中國문헌에 新羅人의 衣服으로 기록되어 있는 褐과 長襦라고 하는 衣服이었을 것이다.

新唐書 東夷傳 新羅條에 男子褐袴 婦長襦라고 있다.

褐의 意味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간단히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1) 編象鞮 (2) 粗衣 (3) 粗布衣
(4) 粗毛布衣 (5) 毛布 (6) 袷衣
(7) 黃黑色 卽 오늘날의 갈색 (8) 袍

褐의 이러한 많은 뜻 가운데에서 新羅 男子 衣服으로 나타나는 褐袴는 과연 무슨 뜻일까? 本研究者는 新羅男子의 褐袴의 褐의 意味를 衣服名으로 해석한다. 卽 褐과 袴로 본다.

褐에 대한 기록은 新唐書 東夷傳 高麗에도 庶人 褐衣라고 보인다. 褐은 高麗時代에도 입혀진 衣服으로서 高麗圖經에 舟人 服飾으로 短褐被體 下無袴襠라는 기록이 발견된다.²⁾

褐에 대하여 玉篇에서는 袍라고 설명하였다. 褐이란 衣服은 일찍이 古代 中國人도 使用하였던 衣服이다.

「漢書王望傳」에 楚人袍曰短褐, 「史記, 孟嘗君列傳」에 士不得短褐, 「索隱」에 短音豎, 豎褐, 謂褐衣而豎裁之, 以其省而便事也. 라 하였다. 「史記, 秦始皇紀」에 夫寒者利短褐, 「注」에 集解曰 短, 一作短, 小襦也. 라 하였다. 여기에서의 短褐은 短襦, 小襦의 뜻이다. 또한 短褐은 長襦의 意味가 있다. 短는 豎使 布長襦(說文), 長襦, 複襦, 小襦의 뜻이 있어 短字가 褐字와 연결되어 한 단

2) 徐兢, 高麗圖經, 第19卷 民庶, 舟人.

어가 되어도 短襦, 布長襦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다.

高麗 舟人の 短褐이 短襦나 小襦가 아니었다는 것은 아래에다 袴襦를 입지 않았었다는 기록만으로도 알 수 있다. 高麗 舟人服으로서의 短褐은 勞役者의 衣服이었어도 속에 바지를 입지 않았으므로 短褐의 크기는 넉넉하고 길이는 적어도 下體가 드러나지 않도록 감출 수 있을 정도로 긴 의복이었을 것이다. 즉 短褐은 우리 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두루마기 種類, 卽 袍類이지 現今 사용하고 있는 의미의 저고리類는 아닌 것이다. 아래의 기록을 보면 短褐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질 것이다.

玉篇에서는 短字를 두루마기수로 번역하였고 이것을 長襦 短褐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 說明은 長襦란 말이나 短褐이란 말을 해석하는데 귀중한 기록이다.

新羅 婦人服으로 나타나는 長襦란 말은 現今 사용되는 말로 하면 長襦란 말은 袍를 의미한다.

長襦는 卽 襦와 同一한 形態의, 길이가 袍와 같이 긴 옷으로서 袍의 一種이다. 長襦는 卽 長袍이다.

新羅 婦人の 長襦가 어떤 形態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高句麗의 襦와 같은 形態였는지 아니면 다른 形態였는지 알 수 없다.

新羅의 褐과 長襦, 또는 高麗의 短褐이란 옷 이름은 中國人이 기록한 것이므로 中國人의 褐制에 대한 說明을 찾아 보기로 한다.

師古의 法에 褐制若裘, 今道士所服者是也. 裘卽 如今之道服也, 斜領交裾, 與今長背子略同, 其異者背子開袴(胯), 裘則縫合兩腋也. 然今世道士服, 又略與裘異, 裘之兩裾相掩搯, 而道士則兩裾直垂也. 라고 하였다.

위에서의 褐은 道士의 法服으로서의 褐에 대한 說明이다. 이 說明에 의거하면 褐制는 裘와 같은데 지금(唐代) 道士가 입는 옷이 바로 褐이라 하고 褐과 裘의 差異는 裘는 斜領交裾이고 道士服은 兩裾直垂인데 있다고 하였다.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各階級別, 男女別 表衣에 대한 禁制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眞骨大等 表衣 半臂袴並禁罽錦羅

眞骨女 表衣 禁罽錦羅

六頭品 表衣 只用 綿絁紵布

六頭品女 表衣 只用 中小文綾絁絹

五頭品 表衣 只用 布

五頭品女 表衣 只用 無文獨織

四頭品 表衣 袴只用布

四頭品女 表衣 只用綿絁紵下

平人 表衣 袴只用布

平人女 表衣 只用 綿紵布

위의 本文에서 보면 階級別 男女別·差異를 발견할 수 있다. 興德王 服飾禁制 頒布 以前에는 眞骨大等階級에 속한 男子와 眞骨女는 罽錦羅를 表衣의 材料로 使用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興德王 服飾禁制에서는 眞骨大等の 男子와 眞骨女 모두에게 罽錦羅를 禁한 것이다. 이 事實은 眞骨階級과 그 이하의 모든 사람에게 表衣의 材料로 罽錦羅를 使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같은 骨品階級이라도 六頭品 階級에서부터 그 아래 階級으로 使用할 수 있는 織物의 質과 數가 階級이 낮을수록 각각 떨어지고 적어졌다. 女子는 男子보다 허용된 織物의 質과 數가 조금 낮다.

대체로 興德王 服飾禁制에 사용하도록 허용된 表衣의 재료는 眞骨階級을 제외하고는 아주 기본적이고 소박한 織物들이었음이 발견된다.

2. 內衣

三國史記 色服條에는 眞骨大等만 제외하고 모든 階級의 男女服飾에 內衣에 대한 禁制가 나타난다. 眞骨大等에게는 內衣에 대한 禁制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眞骨大等이 內衣를 착용하지 않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眞骨大等에게는 內衣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이다.

新羅時代의 各階級과 品階에 따른 內衣의 衣次에 대한 禁目을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보면 眞骨大等에 대해서는 內衣에 대한 言及이 없다. 六頭品과 五頭品 男子 內衣는 同一하게 단지 小文綾, 絁, 絹, 布만 使用하도록 定하였다. 四頭品 男子의 內衣에는 絁, 絹, 綿, 紵, 布만 使用하고 平人男子의 內衣에는 絹, 布만을 使用하도록 하였다.

眞骨女의 內衣材料는 半臂, 袴, 襪, 履의 材料와 同一하게 罽, 織, 羅의 使用을 禁하였으며, 六頭品女의 內衣의 衣次에는 罽, 織, 錦, 野草羅를

使用하는 것을 禁하였다. 五頭品女는 內衣에 단지 小文綾만을 使用하고 四頭品女는 小文綾已下만을 使用하며 平人女는 단지 純, 絹, 綿, 紬, 布만을 使用하도록 規定하였다.

女子의 內衣 材料를 男子의 內衣 材料와 比較하여 볼 때 女子의 內衣란 衣服은 男子의 것보다 훨씬 귀한 材料를 使用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眞骨女나 六頭品女의 內衣의 衣次는 五頭品女나 四頭品女의 內衣의 衣次보다 훨씬 高級品으로서 顯격한 差異가 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眞骨女의 表衣와 內衣의 衣次에 差異가 거의 없이 같은 종류의 織物들이 使用되어 왔었음이 發見된다. 卽 眞骨女의 表衣에는 麤, 縐, 錦, 羅를 禁하였고 內衣, 半臂, 袴, 襪, 履 等에는 麤, 縐, 羅의 使用을 禁하고 있다. 六頭品女의 表衣와 內衣의 衣次도 이 둘을 比較하여 볼 때 表衣에는 中小文綾, 縐, 絹만을 使用하도록 規定하였고 內衣에는 麤, 縐, 錦, 野草羅의 使用을 禁하고 있다는 것이 發見된다. 六頭品女의 內衣에 禁한 衣次는 興德王 服飾 禁令前에는 眞骨女의 表衣의 衣次에도 使用되었던 織物들이다.

위에서 論議된 바를 綜合하여 보면 新羅의 內衣라고 하는 衣服은 內衣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겉에 입는 옷만큼 중요한 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特別히 婦人의 內衣 衣次中에서도 眞骨女와 六頭品女의 內衣 衣次에서 볼 수 있는 것같이 內衣의 衣次가 겉에 보이는 衣服들의 衣次와 거의 同一하게 값 비싸고 貴한 織物들이 使用되었던 點으로 보면 新羅 婦女의 內衣는 겉옷 속에 입혔었을지라도 그것은 分明 겉에서 보이는 옷이었을 것이며 겉옷만큼 중요한 옷이었을 것이다.

表衣란 말이 外衣, 上衣, 겉옷의 총칭인 것 같이 內衣란 말도 어떤 특정한 衣服名이 아니고 속옷의 범칭이기 때문에 新羅人이 內衣라고 불렀던 衣服은 무슨 옷을 지칭하였는지 알 수 없다. 소위 表衣라거나 또는 內衣라고 지칭되는 옷들은 그 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다.

新羅의 內衣가 무슨 옷을 지칭하였을 것인지 그 단서를 찾아보기 위하여 먼저 內衣란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고자 한다.

內衣란 말은 褻衣, 褻衣, 襯衣, 小衣, 內服, 脇衣라고도 한다.

그리고 內衣 種類로는 襦, 襖, 襖, 袍, 袷衣, 袷服, 汗衫, 汗襦, 衫, 小衫, 褙, 褙, 心衣, 袍腹, 帛腹, 帛腹, 詞子, 抹胸, 抹腹, 裊肚, 褻肚, 腰巾, 欄裙, 兜肚, 襯衣 等의 衣服名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內衣 種類를 人體에 입혀지는 部位別로 區分하면 몸의 全身, 上體, 下體, 胸腹部 部位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內衣의 근본 목적은 直接 몸에 닿는 옷으로서 몸에서 나는 땀이나 때 같은 것이 걸옷에 묻지 않도록 하고 또 몸을 보호하는데 그 근본적 목적이 있다. 그 외에도 옷을 입었을 때의 모양을 바르게 하거나 더 좋게 하거나 또는 예의적인 면에서 착용되는 內衣도 많다.

그런데 內衣란 명칭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그 意味가 다르게 사용되었음을 문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먼저 中國 문헌 자료를 찾아 보기로 한다.

周 時代의 內衣는 襦였다. 深衣 內에는 반드시 褻衣를 입었다. 禮記 內則에 衣不帛襦袴라 하였고 急就篇注에는 短而施要口襦, 說文에는 襦, 短衣라 하였다. 玉篇에도 襦를 內短衣라고 해석하였다.

深衣는 겉에 입는 긴 옷이고 襦는 深衣 안에 입는 짧은 옷으로서 下體에는 袴를 입었다.

漢代의 褻衣는 單襦였다. 揚子「方言」에 汗襦或謂之單襦라. 하였고 「注」에 今或呼衫爲單襦라 하였다. 「集韻」에 衫, 小襦, 通作襦. 이라고 하였다.

漢時의 內衣에는 또한 袍가 있었다. 釋名에 袍, 苞也, 苞, 內衣也라고 있다. 또한 釋名에 袍, 丈夫著之至跗者也. 라 하였다.

漢代에는 袍를 內衣라고 했다. 「釋名」에 袍, 丈夫著 下至跗者也, 袍, 苞也, 苟內衣也. 라 하였다. 「方言, 四」에 褻, 明, 長襦也. 라 하였다. 卽 袍는 長襦이며 長內衣인 것이다. 釋名에 의거하면 漢代의 內衣로서의 袍는 丈夫가 입었던 옷으로서 옷 기장은 발등에까지 오는 옷이었다.

唐代에 袍衫 안에 무엇이 입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唐會要」의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咸亨五年五月十日敕, 如聞在外官人百姓, 有不依命式, 遂於袍衫之內, 著朱, 紫, 青, 綠

等色短等色短衫襪子, 或於闕野, 公然露服
貴賤莫辨。」

위의 기록에 보이는 短衫襪子는 袍衫의 內衣로서의 短衫, 襪子인 것이다. 短衫과 襪子는 안에 입었던 內衣였으므로 이 옷색은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나 그것이 겉으로 보였을 때 貴賤의 판별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금한 것이다.

即 唐人들은 袍衫 即 表衣 內에 內衣로 短衫과 襪子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唐代는 新羅와 朝代가 같은 때이기도 하였지만 新羅의 服制는 唐制를 따른 것이었으므로 唐人들이 袍 안에 무엇을 입었었는지 찾아내는 것은 新羅人の 內衣가 무엇이었었는지 찾아내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가 된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表衣는 그 材料名으로 볼 때 全般의 모든 계급의 男女의 表衣材料는 아주 단조롭고 소박한 것들이었다. 이것으로 본다면 禁制의 表衣는 常服의 表衣였을 가능성이 크다. 新羅人の 表衣가 가령 常服의 表衣였었다면 新羅人도 唐人과 다르지 않게 袍衫內에는 短衫을 입고 그 위에 襪子를 內衣로 입었을 것이고 아래에는 男子는 袴, 女子는 裙을 입었었을 것이다.

明代에는 襪, 貼裏, 圓領 등을 겉에 입고 그 속에는 襯道袍를 입고, 또 그 속에 綴領 道袍를 입고, 다시 襖나 혹은 短褂를 속옷(襯衣)으로 또 입었다. 그러므로 道袍는 表衣이기도 하지만 內衣로서의 襯道袍도 있었던 것이다.

다음에는 근래 연구자들의 三國史記 色服에 나타나는 新羅의 內衣에 대한 見解를 먼저 검토하고 다음에 內衣에 대한 國內의 기록을 검토한 후 中國의 기록과 종합하여 본 연구자의 論旨를 전개하고자 한다.

흥매경과 흥무경³⁾은 興德王 服飾禁制의 內衣는 지금의 저고리로 表衣內에 입는 것이라 內衣라고 일음인 듯하다고 하였다. 그후 金東旭⁴⁾은 表衣가 中國制의 袍衫이라면 內衣는 國制의 긴 저고리일 것이고 만약 內衣가 唐의 服飾이라면 巾單일 것이라 추정하였다.

선희창과 조대일⁵⁾은 內衣는 두벌 썬 입을 겉옷 가운데서 속에 입는 것이거나 속에 입는 겉옷을 겸한 저고리로 보고 이 두가지 가운데서 후자를 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들은 신라의 內衣는 三國時代부터 이어오던 긴 저고리가 신라 후기까지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라의 男女가 변함없이 긴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흥매경과 흥무경, 김동욱, 선희창과 조대일 등의 연구자들은 興德王 服飾禁制의 內衣를 모두 저고리로 보았으나 흥매경, 흥무경은 지금의 저고리로 보았고 선희창과 조대일은 三國時代의 긴 저고리로 생각하였다. 김동욱은 긴 저고리가 어느 길이 썬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선희창과 조대일이 三國時代의 긴 저고리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高句麗 古墳 벽화에 보이는 저고리 즉 현대의 jacket 길이 썬 되는 襪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高句麗 古墳 변화의 人物들이 입고 있는 衣服을 살펴보면 그 인물들 가운데에는 袍안에 內衣를 입고 있는 것이 보일 뿐만 아니라 襦袴만 입은 人物들도 內衣를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內衣의 목둘레는 둥근 것도 보이고 V형도 보인다.

高麗時代의 內衣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으나 그것이 어떤 옷이었든 간에 이 시대에도 內衣가 있었을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李朝鮮 時代의 內衣에 대한 기록은 尙方定例나 嘉禮 都監 儀軌에서 발견할 수 있다.

新羅時代와 李朝鮮時代는 그 時間的 間격이 너무 크지만 內衣는 겉옷에 따르는 속옷이므로 李朝鮮時代의 사람들이 內衣라고 불렀던 옷은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기록을 살펴 보는 것은 新羅人の 內衣가 무엇을 의미하였던지 역추정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朝鮮時代의 內衣에 관한 자료를 찾아서 그것들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嘉禮 都監 儀軌와 尙方定例를 검토하면 內衣란 말을 발견할 수 있다. 內衣란 말은 男子 服飾에서 보다 女子 服飾에서 더 뚜렷하게 더 많이 나타난

3) 흥매경, 흥무경, 조선의복, 혼인제도의 연구, 1948, p. 29.

4)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1979, p. 36.

5) 선희창, 조대일, "고려시기 풍습연구", 고고 민속논문집, 7, p. 200.

다. 內衣란 말과 裏衣란 말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歷代 嘉禮 都監 儀軌에 依據하면 仁祖 莊烈后와 英祖 貞順后 등 몇몇 儀軌를 除外한 거의 모든 王大妃, 王妃, 世子嬪 등의 嘉禮 都監 儀軌 服飾에 內衣란 말이 나온다.

內衣란 말은 裏衣란 말과 확실히 구별하여 사용되었다. 內衣란 말은 소위 法服이라고 하는 翟衣一襲에만 포함되어 있었던 衣服이다. 卽 翟衣는 翟衣, 別衣, 內衣의 順으로 나타난다. 翟衣 안에 別衣를 입었고 別衣 안에 內衣를 입은 것이다. 여기서의 別衣는 翟衣와 같은 옷감 치수가 드는 것으로 보아서 翟衣의 中衣에 해당되는 袍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別衣 안에 입혀지는 內衣는 옷감치수를 翟衣, 別衣, 또는 圓衫, 露衣, 襖와 같은 옷들의 감 치수와 比較하여 볼 때 길고 소매가 넓은 袍 종류의 옷이 아니다.

內衣의 옷감색과 재료를 찾아보면 睿宗時, 進宴時 大王大妃의 翟衣의 內衣는 걸과 안감은 紫色 鄉織으로서 같은 감이고 걸감은 14尺, 안감은 21尺이다. 같은 行事的 服飾에서 王妃의 翟衣의 內衣는 大紅 鄉織의 걸감과 안감인데 걸감은 14尺, 안감은 21尺 6寸이다. 大王大妃의 翟衣, 別衣, 內衣는 세벌 모두 紫色 鄉織이고 王妃의 翟衣, 別衣, 內衣는 전부 大紅 鄉織으로 이 三衣는 一襲을 이루고 있다. 紫色은 大王大妃의 翟衣一襲色이고 大紅은 王妃의 翟衣一襲色이다. 옷감재료에는 차이가 없다.

嬪宮의 翟衣는 鴉青色 鄉織인데 別衣와 內衣는 大紅 鄉織으로서 王妃의 別衣, 內衣와 同一한 색과 감이다. 옷감의 걸감은 14尺, 안감은 21尺으로 위의 大王大妃의 걸과 同一하고 王妃의 것과는 大同小異하다.

嘉禮時의 王妃와 嬪宮法服의 翟衣의 內衣도 睿宗時와 進宴時와 同一한 색깔과 옷감이고 옷감의 양은 王妃의 것이 걸 14尺, 안 19尺 2寸이고 嬪宮의 것은 걸감 15尺, 안감 20尺 3寸이다.

女子의 裏衣란 말은 衣襟條에만 나타나고 색은 반드시 白色紬 一匹씩으로 나타난다. 여기의 裏衣는 下體에 입는 속옷 卽 치마 속에 입는 襯衣로서 속곳류(女子 고쟁이나 속곳, 바지 등)라는 것이다.

嘉禮 都監 儀軌를 살펴보면 內衣의 材料는 걸옷인 翟衣, 中衣인 別衣와 內衣는 一襲으로 同一한 織物이 사용되고 색도 嬪의 것을 제외하고 王妃의 것은 이 三衣에 同一한 색이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內衣는 반드시 걸과 안감이 있고 걸감과 안감도 同一織物, 同色이 使用되었다. 그러므로 內衣는 夾衣라는 것이 확증된다. 그것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顯宗 明聖后(1651)의 翟衣內衣의 옷감치수는 걸감이 大紅花紋匹段 15尺 5寸, 內拱 大紅花紋匹段 21尺, 景宗 宣懿后(1718)와 眞宗 孝純后의 內衣 옷감치수는 똑같이 大紅花紋匹段 14尺이고 內拱 大紅花紋匹段 21尺이다.

肅宗 仁顯后(1681) 仁元后(1702)의 翟衣 材料는 多紅과 大紅花紋匹段이었으므로 別衣와 內衣의 材料도 그것과 같은 多紅, 大紅色으로 나타난다. 多紅은 大紅과 同一한 말이다.

그러면 定例나 嘉禮 都監 儀軌에 나타나는 翟衣의 內衣가 어떤 옷이었을지 內衣의 옷감의 尺數와 비슷한 尺數로 나타나는 옷을 위에 언급한 定例와 儀軌에서 비교하기 쉽도록 內衣에 쓰인 織物과 同一名의 織物인 匹段과 鄉織이 쓰인 것을 골라보면 肅宗 仁顯后(1681)의 翟衣, 別衣, 內衣의 옷감은 모두 多紅花紋匹段이었다. 內衣의 소요 尺數는 多紅花紋匹段 14尺, 內拱 多紅花紋匹段 21尺 6寸이다.

肅宗 仁元后(1702)의 翟衣, 別衣, 內衣도 大紅花紋匹段이고 內衣의 소요 尺數도 大紅花紋匹段 14尺, 內拱 大紅花紋匹段 21尺 6寸이다.

翟衣, 別衣, 內衣의 재료가 鄉織인 예를 憲宗 孝顯后(1837)의 法服에서 볼 수 있는데 內衣에 소요된 옷감의 尺數는 大紅 鄉織 14尺, 內拱 大紅 鄉織 19尺 2寸이다.

憲宗 孝定后(1844)의 內衣의 옷감의 색, 직물, 소요 척수도 大紅 鄉織 14尺, 內拱 大紅 鄉織 19尺 2寸으로서 孝顯后의 內衣와 옷감, 색, 척수가 모두 同一하다.

翟衣內衣의 걸감 재료가 鄉織이어도 儀軌의 걸감 14尺보다는 조금 더 짧고 안감의 치수도 19尺 2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도 있다. 文祖 神貞后(1819)의 內衣의 옷감의 치수는 걸감은 大紅 鄉織 15尺, 內拱 大紅 鄉織 20尺으로 나타난다. 純宗 純明

后(1882)의 襪衣內衣의 옷감치수도 大紅鄉織 15尺, 內洪 20尺 3寸으로 나타난다.(嘉禮 都監 儀軌)

男子 服飾에서도 內衣란 말을 찾을 수는 있으나 이 말은 女子服飾에서와 같이 嘉禮 都監 儀軌에 나타나지 않는다. 內衣란 말은 尙方定例에 世子 冠禮服에서 龍袍, 加文刺, 內衣 順으로 단 한번 나타난다. 이 기록의 內容으로 볼 때 內衣란 말이 보이는 것은 冠禮 初加時에 입는 服飾이다. 卽 龍袍와 加文刺, 內衣로 一襲을 이루는 옷이다. 龍袍 안에 加文刺을 입고 加文刺 안에 內衣를 입는다. 여기의 男子 龍袍, 加文刺, 內衣 一襲에 보이는 內衣는 그 順序로 보아서 袍 種類이다. 內衣란 말이 明示되지는 않았으나 定例나 嘉禮都監儀軌에 의거하면 男子의 內衣에 해당되는 옷은 帖裏 또는 脈注音일 때도 있다.

內衣의 옷감은 草綠雲紋匹緞 一匹으로 나타난다.

尙方定例 尊崇時, 進宴時의 大殿과 世子宮의 服飾에는 龍袍, 加文刺, 裏衣로 나타난다. 옷감은 內衣와 같은 草綠雲紋匹緞 一匹이다. 尊崇時, 進宴時 服飾의 龍袍의 內衣는 內衣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裏衣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의 裏衣는 冠禮初加服의 內衣와 同意語로서 그것은 袍 種類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尙方定例에 大殿과 世子宮의 重三 및 端午服飾 衣漙條에는 裏衣가 二次에 苧布一匹으로 나타난다. 여기의 裏衣란 말과는 그 뜻이 同一하지 않고 襪衣類 같기도 하지만 同音同意語인지 또는 同音異意語인지 확실하지 않다. 위의 記錄에 의하면 男子의 內衣란 말과 裏衣란 말은 冠禮와 冊禮喜禮 같은 儀禮服에는 內衣란 말을 사용하고 그외의 服飾에는 裏衣란 말을 사용한 것 같기도 하다. 女子 法服에서만 內衣란 말이 사용된 것과 같이 法服에만 內衣란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나 자료가 미흡하여 확실히 알 수 없다. 혹시 後期로 오면서 男子 服飾에서는 女子 服飾에서와 달리 內衣와 裏衣란 말을 混用하였을 수도 있다. 또는 女子 服飾에서와 같이 內衣와 裏衣는 각각 다른 두가지 옷이었던지도 모른다.

女子 服飾에서는 內衣와 裏衣의 구별이 확실하고 또한 이에 대한 자료도 많으므로 女子 內衣에 사용된 옷감과 同一한 감이 사용된 다른 옷을 찾

아내고 內衣에 소요된 비슷한 척수의 옷 이름을 찾아 보는 것은 李朝時代의 內衣란 옷이 무슨 옷을 지칭하였는지 찾아 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女子 內衣감으로 匹緞과 鄉織이 사용되었을 때 內衣에 소요되는 옷감의 尺數는 대체로 14~15尺이었다. 嘉禮 都監 儀軌의 많은 衣服名과 소요 옷감의 尺數 가운데서 內衣와 同一한 옷감이 사용되었고 옷감의 소용량도 거의 同一한 衣服名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赤古里'라고 하는 衣服이었다.

먼저 赤古里감으로 匹緞이 사용된 예는 仁祖 莊烈后의 襦 赤古里次로 紫의 花紋匹緞 15尺이 나타났다. 肅宗 仁顯后, 肅宗 仁元后의 襦 赤古里次도 仁祖 莊烈后의 襦 赤古里次와 同一한 紫의 花紋匹緞 15尺이다. 肅宗 仁敬后의 襦 赤古里次는 草綠鳳花紋匹緞 11尺 3寸으로서 앞의 15尺보다 조금 적은 尺數이다.

다음으로 襦 赤古里次로 鄉織이 사용되었을 때는 純祖 純元后, 憲宗 孝顯后, 憲宗 孝定后, 高宗 明星后의 襦 赤古리는 全部 同一한 色과 감, 同一한 尺數인 紫의 鄉織 15尺으로 나타난다.

위의 襦 赤古里次 尺數들을 보면 匹緞과 鄉織이 사용된 경우 똑같은 量의 옷감이 소요되었고 肅宗 仁敬后의 匹緞 11尺 3寸만을 제외하고 전부 15尺이었다. 여기에서 緞이란 옷감과 鄉織이란 옷감의 幅이 同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赤古里次로 각종 紬, 綾, 絹, 廣的 등의 이름을 가진 옷감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의 소요 尺數는 차이가 있어 옷감의 廣이 넓고 좁은 것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肅宗 仁敬后의 赤古里감의 척수는 다른 妃들의 15尺보다 적은 匹緞 11尺 3寸인데 이것에 대하여는 두가지 추측을 하여 볼 수 있다. 肅宗 仁敬后의 체구가 다른 妃들보다 적었거나 襦 赤古리는 匹緞일 경우 11尺 3寸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었는데 다른 妃들의 15尺은 넉넉한 尺數였었을 것이다.

內衣와 襦 赤古리에 同一한 옷감 卽 匹緞과 鄉織이 사용된 경우를 비교했을 때 內衣는 걸감이 14~15尺이고 襦 赤古리는 肅宗 仁敬后의 赤古里次 11尺 3寸 한 例만 제외하고 전부 15尺으로 나

타났다. 襦赤古里次가 15尺 미만인 것은 오직 肅宗 仁敬후의 것뿐이다.

이것으로서 翟衣의 內衣는 定例나 嘉禮 都監 儀軌에 소위 '赤古里'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옷과 옷감의 소요량이 거의 같은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內衣와 赤古里가 다른 점은 內衣의 옷감은 袂으로만 나타난다. 숨을 두었거나 單內衣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赤古里에는 襦, 袂것이 있고 白色 同正이 있다. 그러나 內衣次에는 깃이나 同正에 관한 기록을 한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고 內衣에 同正이나 깃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믿어진다. 다른 衣服의 衣次에서도 그 옷에 깃이나 同正이 있는 衣服이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內衣와 赤古里的 차이는 內衣는 그 크기가 赤古里보다 약간 작고 반드시 袂衣이다. 赤古里는 袂도 있고, 또 숨을 둔 것도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각종 儀軌나 定例에 나타나는 '赤古里'란 이름의 옷은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짧은 저고리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의 저고리는 작은 저고리 小襦 卽 腰褄이지만 嘉禮 都監 儀軌나 定例에 보이는 赤古里는 그 옷감 소요량으로 보아서 가슴을 겨우 덮는 짧은 女子 赤古里가 아니다.

匹緞과 鄉織의 幅은 廣幅이었던 것을 위의 都監 儀軌나 定例에서 알 수 있다. 보통 赤古里次에 紬가 쓰인 경우는 대체로 20尺~26尺 가량 소요되고 안감은 대체로 걸감 치수와 같고 때로는 一匹까지도 들어 있다.

嘉禮 都監 儀軌와 尙方定例에 나타나는 女子 赤古里的 옷감必要량을 李圭景이 남긴 기록의 옷감 필요량과 비교하여 보면 嘉禮 都監 儀軌와 尙方定例에 보이는 女子 赤古里라는 이름의 옷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赤古里란 의미의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五洲 衍文 長箋 散稿 卷四 服飾 裁量 辨證說에서 朝鮮時代의 服飾을 만드는데 필요했던 옷감의 소요량을 보면 아래의 <表 1>과 같다.

李圭景의 글에서 옷감의 幅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表 1>에서 보이는 옷감의 幅을 紬의 幅과 같은 것으로 칠 때 儀軌와 定例에 나타나는 赤

<表 1>

男 子		女 子	
衣服名(俗稱)	소요량	衣服名	소요량
大昌衣	28尺		
道袍	33尺		
冬衣	18尺		
赤古里	13尺	赤古里	5尺
內貢	12尺	內貢	4尺
袴	14尺	袴 表裡	30尺
內貢	14尺		
赤衫	11尺	單衫	4尺
單袴	14尺	單袴	13尺
汗衫	3尺 3寸	廣單袴	17尺
男俠袖袂周衣表裡	40尺	裳	23尺
背子 表裡	12尺	無竹裳	9尺
		腰帶 表裡	3尺3寸

古里的 옷감 필요량은 대체로 걸감이 20尺~26尺 이었다. 이 소요량은 李圭景의 服飾 裁量 辨證說에 있는 옷이름 중에서 男子의 周衣 걸감과 거의 같다. 周衣란 두루마기인 것이다.

만약 李圭景이 제시한 옷감 소요량의 옷감 幅이 匹緞이나 鄉織의 幅과 같은 것이라고 가정할 때에도 儀軌와 定例에 나타나는 赤古里次는 걸감이 15尺인데 比하여 李圭景의 女子 赤古里 걸감 소요량은 5尺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儀軌나 定例에 나타나는 女子 赤古里와 李圭景의 기록에 남아 있는 女子 赤古里감의 소요량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이유는 赤古里란 한 가지 이름 아래 옷의 모양이 같은데 길이나 크기가 다른 옷이었거나 아니면 赤古里란 한가지 이름 아래 두 가지 다른 옷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에도 저고리란 말은 치마나 바지 위에 있는 옷인 小襦의 의미로도 사용되고 때로는 表衣 卽 두루마기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과 같이 넓은 의미의 저고리란 말에 좁은 의미의 저고리란 말이 있었을 것이다⁶⁾. 이러한 여러 의미는 四禮

6) 譯語類解上 45 저구리옷(小襖子).

便覽 卷 3, 喪의 袍襖, 俗稱 赤古里 三稱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⁷⁾

新羅의 內衣는 表衣의 內衣로서 袍 種類인 襖子로 믿어진다. 長襖子는 朝鮮時代에도 긴 속옷이라 하여 內衣로 사용되었다.⁸⁾ 長襖子는 소매가 좁은 옷으로서 俗稱 長衣라고 하는 것이었다. 四禮便覽 二卷 三喪 長襖子條에(備要) 袖狹俗稱 長衣. 라고 하였다.

3. 半臂

半臂는 半袖라고도 한다. 이 말의 意味에서 알 수 있듯이 長袖의 半이 되는 소매란 뜻이지만 短袖衣의 의미이다. 三國史記 色服條에 나타나는 新羅의 半臂란 衣名은 中國의 衣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中國에서 半臂는 이미 漢代에도 使用되었었다. 漢代에 婦人衣服에 繡羅이라는 이름의 옷이 있었는데 이 옷은 半臂短衣이다.

繡羅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後漢書 光武紀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時三輔吏士, 東迎更始, 見諸將過, 皆冠幘, 而服婦人衣, 諸于繡羅, 莫不笑止. 「注」에 字書無羅字, 續漢書作襖, 並其物反, 揚雄方言曰, 襖襖, 其短者, 自關之西, 謂之梳襖, 郭璞注云, 俗名襖掖, 據此是諸于上加繡羅, 如今之半臂也.

그런데 事物紀原에 보면 半臂短衣가 唐代에 생긴 것 같이 記述하였다. 卽「隋大業中, 內官多服 半臂, 除卽長袖也. 唐高祖滅 其袖, 謂之半臂, 今背子也.

唐代에 半臂는 婦人들에게 流行되었던 衣服이다. 여러 종류의 半臂가 使用되었던 것을 회화나 다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입을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니어서 襦와 裳 위에 입기도 하고 襦 위에 입었지만 裳 밑에 넣어 입은 것들이 보인다. 半臂의 모양도 앞트임이 對襟인 것, 圓領인 것, 또는 한쪽 領만 있는 翻領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소매의 길이도 아주 짧고 좁은 소매도 있고 통이 조금 넉넉하고 길이는 조금 긴 것 등 다양하다. 半臂衣의 길이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

다.

이렇게 다양한 半臂 가운데서 新羅인이 어느 한 가지 형태만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는지 또는 新羅의 半臂도 唐人의 것들과 같이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男子의 半臂는 襦의 길이와 거의 같은 것이었을 것이라는 한 가지 추측은 하여 볼 수 있다.

唐 服飾인 半臂가 新羅에 들어온 후 그것은 上流階級の 男女 衣服으로 使用된 것을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半臂는 男子에게는 眞骨大等에서부터 四頭品까지 禁制가 있는데 六頭品 男子 服飾에는 半臂에 대한 禁制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六頭品 男子에게는 半臂에 대한 아무런 規制가 없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분명 기록의 탈락이었을 것이라 해석된다.

半臂는 新羅에서 骨品이 있는 男女만 使用할 수 있었던 옷으로서 上流 사회적 신분과 계급상징 표시의 옷이면서 동시에 有骨品者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짓는 의복이었던 것이었다. 이 옷은 아마 새로운 風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4. 短衣

三國史記 色服條의 興德王 服飾禁制에는 六頭品女, 五頭品女, 四頭品女의 衣服에만 短衣란 말이 보일 뿐이다. 모든 계급의 男子와 平人女子 衣服에는 短衣란 말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新羅人의 短衣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短衣가 女子에게만 사용되었던 옷이었을까? 短衣가 男女共用의 옷이었는데 女子에게만 短衣에 대한 禁令을 내렸을까?

短衣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상 먼저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短衣에 대한 禁制를 보기로 한다.

○六頭品女

襦襖, 短衣並禁繡錦羅布紡羅 野草羅 金銀泥.

○五頭品女

禁繡錦 野草羅 布紡羅 總羅 金銀泥 繡羅.

7) 譯語類解 補 28 긴 저고리(掛子).

8) 才物譜, p. 595.

○四頭品女

襖短衣只用絹已下。

위의 禁制에서 보면 短衣는 女子衣服名에만 사용된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短衣의 材料로 사용되었던 織物名들을 볼 때 短衣는 결코 表衣 안에 입었던 속옷 종류의 衣服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短衣는 眞骨女의 衣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것은 眞骨女가 短衣를 입지 않았다는 뜻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眞骨女의 短衣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眞骨女는 短衣의 재료 사용에 규제를 받지 않았었거나 또는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기록이 탈락된 것일 것이다. 만약 규정의 기록이 탈락된 것이라면 短衣에도 表衣의 禁制에서와 같이 麗繡錦羅의 使用은 禁止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平人女의 短衣에 대한 禁制가 없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한 가지 추측은 平人女도 短衣를 입었는데 短衣에 사용할 수 있는 직물은 四頭品女의 것과 같았거나 아니면 그 이하였을 것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四頭品女의 短衣에는 絹已下만을 쓰도록 하였으므로 그 已下였다면 平人女의 短衣에는 布만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한 가지 추측은 平人女는 短衣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短衣란 옷은 品階가 있는 女子만 입을 수 있고 品階가 없는 平人女는 입을 수 없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新羅에서 短衣라고 불렀던 이 衣服은 女子服飾 가운데서 襖, 袴, 襦이 四頭品女 以上の 服飾名에만 나타나는 것같이 短衣도 四頭品 以上の 女子에게만 허용되고 平人女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衣服으로서 短衣라고 불렀던 이 衣服도 다른 衣服과 더불어 唐에서 들어온 衣服名일 것이라는 것이다.

半臂란 衣服도 四頭品 以上の 男女 衣服에 들어 있듯이 品階가 있는 新羅의 上流 階級과 平人 階級 사이에 뚜렷한 階級區別의 표시로서 唐에서 유래된 服飾들은 幞頭의 사용이 平人男子에게 허

용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四頭品 以上の 男女 服飾名으로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短衣란 말의 한 가지 뜻은 글자 뜻대로 짧은 옷의 총칭이다. 短衣라고 說明된 衣服名을 문헌에서 찾아 보면 그 수가 상당히 많은데 다음과 같은 것들을 찾아 볼 수 있다. : 襦(短衣, 內短衣), 練, 襦, 襦(設文), 裙, 梳, 綢, 袷, 綢, 襦, 汗衫, 汗衣, 衫, 小衫, 小襦, 短襦, 短衫

이와 같이 많은 종류의 짧은 옷 중에서 어느 옷이 新羅의 短衣였을 것인지 알 수 없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新羅의 短衣는 女子衣服名에만 있으며 女子 中에서도 品階를 가지고 있는 六頭品女, 五頭品女, 四頭品女의 衣服에만 포함되어 있는 옷이다.

卽 新羅女人의 衣服名으로 나타나는 短衣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新羅의 短衣란 말은 짧은 옷의 총칭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옷을 지칭한다.

李如星은 三國史記 色服에 나타나는 短衣를 「說文」의 襦, 短衣란 說明을 근거로 하여 襦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新羅의 短衣를 唐書 東夷傳 新羅條의 婦人長襦와 同一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보이는 新羅 短衣에 대하여 홍매경과 홍무경은 襦, 汗衫, 그 외의 짧은 옷은 다 短衣라 할 것이며 襦라면 卽 內衣와 같은 것이 되고 汗衫이라고 하면 속옷을 麗繡錦羅로 奢侈할 까닭이 없으므로 短衣는 무슨 옷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⁹⁾.

金東旭은 興德王 服飾禁制의 短衣는 男子에게는 該當되지 않는 것 같고 男女 같이 相關되는 것은 內衣가 있으므로 이것이 저고리에 該當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때 이미 女子의 저고리는 길이가 짧아졌을 것이며 이 禁制에 中國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므로 傳統的인 襦에서는 이미 멀다고 하였다¹⁰⁾.

그는 후에 또 短衣는 현재의 저고리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같은 책 같은 page에서 또 短衣는 오늘날의 저고리라고 正反對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¹¹⁾. 어느 생각이 그

9) 홍매경, 홍무경, 조선의복, 혼인제도의 연구, 乙酉文化社, 1948, p. 31.

10)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韓國研究院, 1963, p. 9.

11)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9, p. 37.

의 眞意인지 알 수 없다.

이은창도 李如星과 같이 興德王 服飾禁制의 短衣를 表衣보다 짧다는 뜻으로 보고 그것을 저고리(襦)로 보았고 그것을 唐書 東夷傳 新羅條의 婦人長襦와 연결시켰다¹²⁾.

선희창과 조대일은 興德王 服飾禁制의 短衣를 짧은 여자 저고리였을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이 근거로 고구려의 안악 3호 무덤 벽화의 방아간에서 방아를 쟀는 여자의 저고리와 관련시켰다¹³⁾.

李如星과 이은창은 新羅의 短衣를 現今의 女子 저고리에 비하여 긴 저고리 즉 허리 아래까지 내려가는 길이의 저고리 즉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男女의 短上衣과 같은 길이의 저고리를 長襦라고 이해하고 唐書의 新羅 婦人長襦와 短衣, 고구려 고분 벽화 男女의 短上衣 卽 襦를 같은 길이의 옷으로 이해한 것이다.

반면에 선희창과 조대일은 新羅婦人의 短衣를 짧은 여자 저고리라고 보았다. 그들이 의미한 짧은 여자 저고리란 어느 정도로 짧은 저고리를 의미한 것인지는 이해할 수 없으나 安岳 三號墳의 방아 쟀는 여자의 저고리를 예로 들었으므로 허리 정도 닿는 길이의 저고리로 추측하기로 한다. 安岳 三號墳 女子가 입고 있는 저고리는 허리춤까지 오는 길이의 옷이다.

여기에서 長襦란 말의 意味에 대하여 간략히 言及 하고자 한다. 이 말은 唐書 東夷傳 新羅條의 新羅婦人 長襦란 기록에서 본 것인바 우리 나라의 新羅服飾 해석을 위하여서도 중요하거나와 服飾用語의 바른 이해와 바른 使用은 특별히 服飾研究者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用語의 原意味를 모르고 任意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오도하기 때문이다.

長襦란 말은 袍와 同一한 意味로 說明되어지는 말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現今 한국 복식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길이의 襦가 아니다. 長襦란 卽 袍, 長袍란 意味이다.

長襦에 대하여 찾아 보면 「方言四」에 袍, 褒明謂之袍라 있고 「注」에 褒明, 長襦也. 라고 하였다. 「廣雅釋器」와 廣韻에도 袍, 長襦也. 라고 하

였다. 「釋名, 釋衣服」에 袍, 丈夫著下至附者也, 袍, 苞也, 苞, 內衣也. 라고 하였다.

長襦란 옷길이가 袍와 같이 긴 襦이지 허리 정도 또는 허리를 가릴 정도 길이의 襦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唐書에 기록된 新羅婦人의 長襦는 길이가 袍와 같이 긴 長袍 種類에 속하는 襦이지 고구려 고분벽화 男女人物들이 마자 위에 입은 둔부를 덮은 길이의 襦가 아니다.

그러므로 三國史記 色服에 있는 新羅의 表衣가 만약 常服의 表衣라면 新羅婦人의 表衣는 長襦에 해당되는 袍일 것이다. 卽 襦와 같은 모양의 옷으로써 길이만 袍와 같이 긴 것이었을 것이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短衣란 말은 新羅人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거나 그들만이 사용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中國에서 사용된 短衣란 말의 여러 옷 이름이나 또는 意味 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短衣의 意味를 新羅人도 中國人처럼 사용하여 같은 意味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短衣는 長衣와 對稱되는 말이다. 그런데 古代 中國人은 長衣와 短衣란 말을 어떤 意味로 사용하였는지 간단히 보고자 한다.

中國 古代人들이 短衣中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것은 襦였다. 그들은 襦를 短衣라고도 하였다.

短衣는 楚人의 衣服樣式이었는데 漢代에 漢人이 楚人의 衣服樣式을 따랐다.

史記 叔孫通傳에 의거하면 叔孫通의 儒服을 漢王이 싫어하여 그 衣服을 短衣禁制로 바꾸도록 하였다고 한다. 漢王은 漢高祖이다. 索隱孔文祥傳에는 高祖가 楚人이었기 때문에 其俗을 따라서 옷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漢代의 百官은 常時에 便服을 입었는데 襜褕와 儒服이 있었다. 儒服은 儒家가 평상적으로 입었던 衣服으로서 그 衣服은 寬大하고 大袖이며 大帶를 매었다. 襜褕는 短衣이다.

楚人의 衣服樣式이란 楚人이 短衣를 좋아하였는데 禪衣의 기장은 땅에서부터 三寸 以上 되었다. 禪衣란 一名 襜褕라고 한다. 禪衣에는 直裾禪衣와 曲裾禪衣가 있다.

西漢時代의 服式은 길고 큰 袍服이어서 부적절

12)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8, p. 47-48.

13) 선희창, 조대일, "고려시기 풍습연구", 고고민속 논문집, 7, pp. 200-201.

하였다. 漢書 朱博傳에는 官屬의 服裝이 褒衣大裙였기 때문에 衣服의 길이를 땅에서 三寸 떨어지도록 짧게 만들도록 命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

漢代의 男子들은 日常의으로 襦를 제일 많이 입었다. 「說文」에 襦, 短衣라 하였다. 「急就篇二注」에 短衣曰襦, 自膝以上. 이라 하였다. 「急就篇」 袍襦表裏曲領帶의 「注」에 長衣曰袍, 短衣曰襦라 하였고 短而施要曰襦라 하였다.

說文解字의 「段注」에는 顏注急就篇曰, 短衣曰襦, 自膝以上, 按襦若今襖之短者, 袍若今襖之長者. 라고 하였다.

襦의 길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漢代에 襦를 短衣라고도 하였고 이것은 唐代에도 마찬가지였다. 「急就篇」은 漢史遊撰이지만 「急就篇, 注」는 唐의 顏師古撰이다. 그러므로 唐代人이 短衣라고 使用하였던 이 말의 뜻을 아는 것은 新羅의 短衣란 말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顏師古의 「急就篇, 注」의 短衣, 袍, 襦에 대한 해석은 唐代에 使用된 服飾用語를 이해하는 데는 물론 新羅의 服飾用語 研究에도 아주 귀한 자료가 된다.

위에서 본 清段玉裁의 「說文解字, 注」의 설명도 唐代와 清代의 服飾用語의 관계와 의미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위의 說明과 解釋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顏師古의 것이다. 同一人의 說明인데 襦에 대한 說明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卽 한 가지 說明은 短衣 卽 襦는 옷길이가 무릎 以上 되는 것이라 하였고 또 다른 한 가지 說明은 短衣를 襦라 하는데 짧고 腰에 찢치는 것이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唐代의 短衣 卽 襦의 길이는 自膝以上 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顏師古의 기록에 의거하면 唐代의 短衣는 襦였었다. 이 說明은 「說文」의 說明과도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新羅人도 唐人과 같이 襦를 短衣라고 일컬었을 것이다. 朝鮮時代에도 襦를 短衣, 적구리라고 하였다.¹⁴⁾

沈從文은 窄袖이며 長袖이면서 입었을 때 대체로 무릎 길이쯤 되어 보이는 唐代의 般夫의 옷을

唐代의 眞正的 短衣라고 하였다¹⁵⁾.

이 般夫의 短衣는 顏師古의 「急就篇 注」 短衣曰襦 自膝以上이란 說明과 맞는 길이의 옷으로서 短衣 길에는 半臂를 입었다. 두 人物 中 앞의 人物의 半臂는 옆트임이 있고 半臂 위에 帶로 묶었다. 이 앞의 人物의 短衣는 半臂의 옆트임 사이로 약간 보이는데 길이가 半臂보다 약간 짧은 것같이 보인다. 즉 短衣와 半臂길이가 거의 같다. 半臂 소매 끝에는 넓은 단을 낸 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뒤에 있는 人物의 半臂에서도 똑 같다. 앞, 뒤의 두 人物 모두 아래에 長袴를 입었는데 袴의 아랫단도 半臂의 소매에서와 같이 단을 내었다.

뒤의 人物은 앞의 人物보다 훨씬 짧은 半臂를 短衣 위에 입었는데 半臂는 앞 人物에서와 달리 옆트임이 없다. 뒤 人物의 短衣는 앞 人物의 短衣가 半臂 안에 있는 것과 달리 半臂와 短衣의 길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半臂안에 입혀진 短衣 아랫부분이 많이 보인다. 이 두 人物은 똑 같은 斗笠을 썼고 신발은 草 或은 麻鞋를 신었다. 두 人物의 袴는 모두 통이 좁다.

이 두 人物들이 입은 半臂로 보아서 新羅人의 半臂에도 길이나 형태가 꼭 한 가지만 있지 않고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宋代의 기록에서 보면 中國人은 短衣란 말을 소위 胡服의 褶 卽 襦에 대응되는 말로 쓴 것을 볼 수 있다. 夢溪筆談에 中國衣冠 自北齊以來 全用胡服, 窄袖緋綠短衣長鞞靴有鞵鞞帶, 皆胡服也. 라고 하였는 것에서 잘 볼 수 있다.

이상의 것을 종합하여 보면 新羅의 短衣가 襦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唐代의 襦는 이미 그 形制가 다양하여 領의 형태도 一定하지 않았다. 大襟만 있지 않았고 對襟도 있었기 때문에 新羅의 短衣가 어떤 形制였는지 알 수도 없거나와 短衣의 길이도 어디쯤 오는 길이의 옷이었는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新羅의 短衣가 男女 共用的 옷이 아니고 女子만의 옷이었다면 그리고 唐婦人 服飾의 襦制를 따랐다면 新羅 婦人들도 그것을 高腰裙 안에 들

14) 才物譜, 衣部.

15) 沈從文, 中國古代 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 175.

이가도록 입을 것이므로 新羅婦人의 短衣는 치마말기를 거드랑이 좁에서 短衣 위에도 매어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넉넉한 길이면 되었을 것이다.

만약 新羅婦人이 短衣를 겹에 입었다면 短衣의 길이는 한 가지만 있었던 것이 아닐 것이다. 高句麗 古墳벽화 인물들이나 新羅 암각화와 陶俑 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길이 즉 엉덩이를 거의 덮은 길이의 短衣도 있었을 것이고 安岳三號墳의 방아 짚는 女人의 저고리처럼 허리쯤 오는 길이의 短衣도 있었을 것이다. 또는 무릎 이상 되는 길이의 短衣도 있었을 것이다.

5. 褙, 襜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褙襜이란 말이 나타난다. 이 褙襜이란 말은 婦人服飾 項에만 있는데 六頭品女, 五頭品女, 四頭品女의 衣服에만 포함되어 있다.

褙襜의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三國史記 色服條에서 褙襜에 관한 禁目을 보기로 한다.

○六頭品女

褙襜 短衣 並禁 麗縹錦羅 布紡羅 野草羅 金銀泥

○五頭品女

褙襜 禁麗縹錦 野草羅布紡羅 金銀泥 縹縹

○四頭品女

褙襜 只用 綾已下.

眞骨女의 服飾에는 褙, 襜과 短衣에 대한 規制가 없는데 褙, 襜에 대한 規制가 없다는 것이 眞骨女는 褙, 襜을 입지 않았다는 意味로는 解析되지 않는다. 興德王 服飾禁制를 살펴보면 全般的으로 眞骨女에 대한 服飾規制는 六頭品女, 五頭品女, 四頭品女 等에 대한 服飾規制에 比하여 그 수가 훨씬 적다. 이는 眞骨女는 最上인 王族階級에 속하였었기 때문에 그 아래 階級보다 規制가 적었다고 생각된다.

同書 眞骨女의 服飾에 대한 規制에는 褙, 襜뿐만 아니라 短衣, 襖袴, 襪袴 等과 같은 品目 이름도 보이지 않는다. 六頭品女, 五頭品女, 四頭品女의 短衣와 褙, 襜이 그 次序에 制約을 받는 反面에 眞骨女의 短衣와 褙, 襜의 材料는 興德王 服飾

禁制 以前과 같이 任意로 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라 解析된다.

反面에 平人女의 服飾에 褙, 襜이 없는 것은 半臂가 眞骨階級과 品階가 있는 階級 以上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衣服이었던 것처럼 婦人의 褙, 襜도 四頭品女 以上 卽 四·五·六頭品女와 眞骨女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褙襜이 무엇이나에 대하여는 三國史記 번역자들에게서 두 견해가 함께 보이는데 褙襜을 褙襜을 二物로 본 견해와 褙襜 一物로 본 견해가 있어 왔다. 褙襜을 褙와 襜 二物로 본 見解는 三國史記 北譯本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후의 몇몇 翻譯本에서 발견된다. 이들 翻譯本에 褙는 배자로, 襜은 잠방이로 나타난다. 이병도 翻譯本에는 六頭品女와 五頭品女의 褙襜은 褙(배자)와 襜(잠방이)로, 四頭品女의 褙襜은 배자로 있어 혼란스럽다. 四頭品女의 褙襜도 六頭品女, 五頭品女에서처럼 褙, 襜일 것이다.

이밖에 다른 翻譯本에 褙襜은 배자로 나타난다. 褙襜을 背子 一物로 보게된 견해는 昭和 16年 刊行의 「高麗 以前, 風俗 關係 資料 撮要」의 新羅 服制表에 연유된 것으로 생각된다. 李如星을 비롯하여 연구자들은 주로 위 책의 新羅服制表를 사용하여 왔다.

新羅婦人의 衣服名으로 나타나는 褙와 襜이 두 글자가 褙襜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개의 말인지 또는 褙, 襜으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다른 말인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의문이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단순하게 번역하고 해석하는데 머물러 왔다.

新羅婦人服으로 나타나는 褙襜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褙와 襜인가? 褙襜인가? 또는 그외의 다른 말의 誤記인가? 褙와 襜이라면 그 의미들은 과연 背子와 잠방이인가? 褙襜이라면 그것이 과연 背子の 의미인가? 背子라면 背子の 의미인가?

既存의 見解대로 褙襜을 褙(背)子 一物로 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褙襜은 分明 中國 服飾名일텐데 褙와 襜이란 衣服名은 中國文獻에 나타나지만 褙襜이란 衣服名은 中國文獻에서 찾을 수 없다. 褙와 襜은 分明히 中國 衣服名이다. 그

런데 褙褱이란 말을 中國문헌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 理由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몇가지 理由를 推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褙褱은 褙褱 卽 一物이 아니고 褙와 褱 二物이기 때문일 것이다.
- (2) 褙褱 中 어느 한 글자가 誤字일 것이다.
- (3) 褙褱이란 말은 新羅人만 사용한 말일 것이다.

三國史記 번역자들은 褙褱을 背子라고 번역하였거나 또는 褙褱의 褙字를 背子라고 번역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후 褙褱의 주석이나 해석에서는 하나같이 褙褱은 소매없는 背子라고 하였다.

金東旭은 褙褱을 中國制의 背子로 보고 唐의 半臂, 日本女官 服飾의 背子が 그것이라 하였고 그는 또한 唐武士의 裊褱을 新羅의 褙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¹⁶⁾ 여기에서 新羅의 褙褱을 唐의 半臂로 본 것은 興德王 服飾禁制에는 新羅 男女服飾에 半臂가 따로 있으므로 이 견해는 무리한 견해이다.

柳喜卿도 褙褱을 半臂와 같은 계통의 것으로서 소매가 없는 背子の 一種으로 보았다.¹⁷⁾ 金英淑의 褙褱에 대한 해석도 柳喜卿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¹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행의 三國史記 주석에도 褙褱을 소매없는 배자라고 해석하였다.¹⁹⁾

三國史記 번역자들 가운데 褙褱을 褙와 褱의 二物로 보고 褙를 背子로, 褱를 잠방이로 번역한 것에서 褱를 잠방이로 번역한 것도 무리한 번역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褱는 잠방이의 뜻도 있다. 그러나 잠방이란 말은 男子의 單袴衣이므로 女子옷 이름이 아니다. 褱을 女子옷인 男子의 袴衣의 의미로 번역하려면 속곳이나 또는 고쟁이 등으로 번역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褱의 뜻 가운데서 속곳이나 고쟁이 등으로 번역하기도 무리한 이유는 褙褱의 材料를 보아도 그렇다. 三國史記 色服에서 먼저 女子 服飾 構造를 잠깐 보면 女子의 아래에 입는 옷으로는 表裳, 內裳이 있고 따로 또 袴가 있다. 그렇다

면 褱을 속곳이나 고쟁이로 번역한다면 속곳이나 고쟁이는 위에서 볼 때 적어도 表裳과 內裳 안이 나 또는 袴 안에 입는 속옷이다. 겉에 보이는 옷이 아니다. 그런데 속곳이나 또는 고쟁이 재료로 黹繡錦羅나 金銀泥 같은 값 비싸고 귀한 감이나 장식을 아무리 사치스러웠던 新羅女人들이었었을지라도 썼다고 상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2)의 褙褱이란 글자 中 어느 한 글자가 혹은 傳寫 과정의 誤記일 수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바로 褙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록으로부터 온 것이다. 三國史記 顯宗本에는 他本에 褙褱이라 보이는 글자의 褙字가 褱字로 나타난다. 즉 顯宗本에는 五頭品の 褙褱은 褙褱으로 나타난다. 他本에는 褱字가 아니고 褱字로 나타난다. 三國史記 연구자들은 顯宗本에 나타나는 五頭女의 褱褱의 褱字를 褱字의 諱字라 하여 褱褱을 褱褱으로 訂正하였다.

中國에서 音 未詳인 이 褱字가 어떻게 新羅婦人服 이름에 褱褱이란 것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 이 褱褱은 실로 褙褱의 誤記였을까? 唐나라의 文物을 수많은 받아들인 新羅에서 唐服飾을 받아들일 때 中國에 없었던 옷 이름을 만들어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곤란하다. 新羅에서 織物 貴重度의 等級 순서까지도 唐制와 거의 일치되는 制度를 따라서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더욱 그렇다.

音 未詳이란 이 褱字를 보면 「衣」+「褱」로 이루어져 있다. 漢字는 대체로 左右 두 개의 글자로 한 글자를 이룰 경우 左側은 뜻이고 右側의 글자는 그 音을 따르는 경우가 흔하다. 古代에는 이 褱字의 音을 未詳이라 하였어도 이 글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褱音으로 읽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唐代의 婦人袍에 褱褱이란 옷이 있었고 李朝時代의 嘉禮都監儀軌에도 褱褱라는 衣服名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褱褱은 褱褱과 우리 나라 音으로 同音이 되고 新羅의 褱褱은 唐의 褱褱을 欸음한 것

16)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1979, pp. 37-38.

17)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1980, p. 93.

18) 金英淑, 韓國服飾史 辭典, 1988, p. 220.

1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 三國史記, 4, 주석편(하), 1997, p. 117.

일 것이며 그것은襠褌을 의미할 것이다. 唐에襠褌이란 衣服名은 있었지만 袴褌이란 衣服名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新羅 婦人服으로 나타나는 袴褌은 袴와 褌이었거나 또는襠褌을 新羅에서 袴褌이라고 썼었거나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中華大字典에는 褌字를 袴의 譌字라 하였다. 袴褌이 袴褌이라던 新羅 婦人의 袴褌이란 말은 襠褌이거나 또는 褌, 褌으로서 또 다른 意味의 옷이었을 것이다.

新羅의 袴褌이란 말이 기록이나 傳寫上의 誤謬가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本 研究者는 褌의 袴와 褌을 各各 독립된 衣服으로 보고자 한다. 卽 袴는 袴(背)子로 褌은 女子의 下 裏衣 卽 고쟁이類가 아닌 上體에 입는 옷으로 보려고 한다. 金東旭을 위시하여 그 후의 다른 연구자들이 新羅 婦人 衣服인 袴褌을 소매없는 袴子라고 본 唐時代의 婦人服에 袴褌이라는 이름의 옷이 있었다. 袴褌은 褌褌이라고도 쓴다. 褌字는 褌字로도 쓰는데 이 두 글자는 褌字와 같은 글자이기도 하다. 褌字는 「廣韻」에 褌, 褌褌, 「集韻」에 褌, 褌褌, 婦人袍, 「類篇」에 褌褌, 婦人袍也. 라고 하여 婦人袍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褌字의 뜻을 보면 「類篇」에는 上衣也라고 說明되어 있고 「篇海」에는 褌과 同一한 字라고 하였다.

褌, 褌과 同字인 褌字의 뜻을 보면 「玉篇」에는 褌, 衣上羅라 하였고 「廣韻」에도 衣上, 又作褌라고 있다. 「集韻」에는 褌, 上衣也. 或从蓋라고 있다.

唐時代 婦人의 褌褌은 唐의 蔣防의 小說「霍小玉傳」에 著 舊石榴裙, 紫褌褌, 紅綠褌子라고 나타난다. 霍小玉傳에 보이는 紫褌褌을 연상시키는 그림은 周昉의 簪花仕女圖에서 볼 수 있다. 이 그림의 婦人들이 입고 있는 袍는 아주 얇은 紗羅種類로 만들어진 것 같은 것들도 있어 唐代 婦人褌褌의 모양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中國文헌에서 袴褌이란 衣服名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하나의 衣服 卽 背子로 본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唐代에 半臂 또는 半袖라고 불렀던 衣服을 後代에 背子, 背心, 褌子 등의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렀으나 唐代의 半臂와 唐代의 背子와 同

一物이 아니다. 또한 唐의 半臂는 이미 新羅에 流入되어 사용되었고 이 옷 이름은 三國史記 色服에 新羅의 男女 衣服에 나타나므로 袴褌이 소매가 없는 현재의 조끼와 비슷한 옷 종류인 意味의 背子가 될 수 없다. 唐代의 半臂가 後代에 背子란 의미의 말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다.

新羅의 袴褌은 分明히 女子衣服이다. 唐代의 背子란 衣服은 제일 겉에 입는 옷으로서 披風 卽 現今의 風衣, 俗稱 大衣를 말한다. 지금의 西洋式 外套를 大衣라고 한다.

唐代의 背子란 衣服은 女子 禮服으로서 大袖 위에 입혀진 衣服이다. 「事物紀原 衣裳帶服部」 大衣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商周之代, 內外命婦服諸翟,
唐則裙襦大袖爲禮衣, 開元中,
婦見舅姑, 戴步搖插翠釵,
今大衣之制, 蓋起于於此,
實錄, 大袖在背子下, 身與衫子
齊而袖大 以爲禮服, 疑卽此也.

唐 開元 元年是 713 A.D.이고 29年 卽 741년까지이다.

「中華古今注」에서는 背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隋大業末, 煬帝宮人百官母妻, 著
緋羅縠金飛鳳背子, 以爲朝服及
禮見賓客舅古之長服也, 天寶年中,
西川貢五色織成背子 [玄宗詔曰,
觀此一服, 費用百金, 其往金玉
珍異並不許貢]

「事物紀原」背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秦二世詔, 衫子上, 朝服加背子,
其制袖短于衫, 身與衫齊而大袖,
今又長與縠齊, 而袖纔寬于衫,
蓋自秦始也.

「古今圖書 集成, 衣服部」에는 袴子 卽 今之披風, 實錄曰, 秦二世詔朝服上加袴子. 其制 袖短於衫 身與衫齊而大袖. 宋又長與裙齊, 而袖纔寬于衫.

위의 記錄에 의거하면 唐代의 袴子是 女子禮服이었는데 소매는 衫보다 짧고 몸판은 衫과 같으나 소매가 大袖인 옷이었다. 卽 唐代의 袴子是 小

매가 衫子보다는 짧으나 大袖로서 大袖 卽 大衣 위에 입는 外衣였던 것이다. 三才圖會에 그림으로 보이는 明代의 褙子が 소매는 衫보다 조금 짧고 큰 소매를 가진 긴 옷인데 위에 보이는 褙子の 說明과 같다. 明代에는 褙子를 被風이라고도 했다. 卽 唐代의 褙子를 現代語로 말한다면 外套 卽 over coat類의 옷이었던 것이다.

褙子は 秦時代에 입혀지기 시작한 옷으로서 隋 唐代에 女子禮服으로 입혔다.

王字清은 衣外에 더하여 입는 褙子 卽 秦二世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옷은 先秦時代의 襲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보고 「禮記 玉藻」의 服之襲也, 充美也. 와 관련시켰다.²⁰⁾ 襲은 褙과 通하는 글자이므로 褙子를 褙이란 衣服과 관련시킨다면 모르겠지만 褙子와 옷 위에 더하는 것이란 의미의 襲과 관련시키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지 않다.

本 研究者는 三國史記 色服의 褙褙를 褙와 褙二物로 본다고 하였다. 褙의 뜻 가운데는 袴屬인 감방이 또는 고쟁이의 뜻이 있다. 本 研究者는 褙를 위의 袴屬에 속하는 옷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褙은 褙褙이란 뜻이 있는데 褙褙이란 其一當胸, 其一當背의 뜻으로서 現今의 背心과 같은 종류의 옷이다. 「釋名釋衣服」에 其一褙臂, 其一當背也. 라 하였다. 「唐書, 車服志」에도 褙褙之制, 一當胸, 一當背, 短袂覆膊이라 하였다. 車服志의 기록은 男子옷이다.

三國史記 色服의 褙를 褙褙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新羅의 褙는 女子服飾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것을 褙褙로도 해석할 수는 있다. 그러나 本 研究者는 褙字만 있을 때도 褙褙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康熙字典에서 褙를 褙褙일 것이라고도 해석하였다.

唐代 女子服飾에 褙褙이란 이름의 옷이 있다. 褙褙는 婦人袍이다. 褙字는 類篇에 上衣也라고 하였다. 篇海에 褙과 同字라고 하였다.

褙字는 褙, 褙과 같은 字다. 「廣韻」에 褙, 褙褙. 「集韻」에 褙褙, 婦人袍. 「類篇」에 褙褙, 婦人袍也. 라고 있다.

褙와 同字인 褙字의 뜻을 보면 「玉篇」에 褙, 衣上羅. 라 하였고 「廣韻」에 褙, 衣上, 又作褙. 라 하였고 「集韻」에 褙, 上衣也, 或从蓋. 라 하였다.

唐 蔣防의 小說 「霍小玉傳」에 著舊 石榴裙, 紫褙褙, 紅綠褙子라는 기록이 있다. 이 唐代의 小說에 나타는 石榴裙, 紫褙褙, 紅綠褙子는 唐代 女人들에게 사랑받고 流行하였던 옷 색깔이다. 여기에 묘사된 唐代 女人服飾을 周昉의 簪花仕女圖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그림의 婦人들이 입은 袍가 褙褙이라고 보인다.

褙褙는 婦人袍인데 그것은 주로 羅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인 것과도 일치한다. 簪花 仕女圖 部分 그림의²¹⁾ 제일 右側 女人은 紅裙에 紫褙褙를 입었고 위에는 紅色繡披帛을 褙褙 위에 둘렀다. 이 女人의 服飾은 霍小玉傳에 묘사된 服飾과 同一하다. 服色도 同一하고 裙과 褙褙위에 褙子를 들른 것도 同一하다. 羅로 만들어진 袍 卽 褙褙는 周昉의 簪花仕女圖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 三國史記 色服 新羅婦人服 褙褙의 褙는 이 글자 하나일 때 褙褙으로서 婦人袍이다. 褙褙의 褙字가 혹시 褙字이고 音 未詳으로 나타나는 褙字가 褙나 褙, 褙와 같은 音의 글자이고 褙褙를 사용한 것이라 가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新羅의 褙褙는 褙褙일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 褙褙, 褙褙는 褙이며 上衣, 婦人袍라고 說明되었다. 그런 反面에 또 한편으로 褙褙는 前後兩當衣라 說明되었고 지금의 연구자들은 褙褙를 소위 兩當 卽 無袖短衣라고 이해하였다. 왜 이런 混同이 일어나는가?

褙와 褙字는 褙褙, 褙褙으로서 婦人袍의 뜻이다. 우리말 玉篇이나 字典 등에서도 이 뜻은 同一하다. 卽 褙字는 褙과 同字로서 저고리 할, 上衣로 說明되었고 褙字는 계집저고리 할, 婦人上衣라고 說明되었다. 그런데 褙字는 더그래 할, 배자 할, 褙褙前後兩當衣라 說明되었다.

漢籍에서도 褙褙는 前後兩當衣로 說明되고 褙褙과 褙褙는 婦人袍로 說明되었다. 卽 褙褙과 褙褙(褙褙)은 다른 옷이라 說明되었다.

褙褙와 褙褙에 대한 현대 연구자들의 해석의 混同은 褙과 褙音이 같고 康熙字典에서 이 두 글자는 音義가 같은 것 같다는 해석과 두 글자의 混用에 기인되는 것 같다. 「唐書 車服志」에 朝參殿庭 武舞郎과 文武郎의 白練褙褙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白練褙褙는 緋絲布大褙와 黃紗袍 위

20) 王字清, 中國服裝史綱, p. 91.

21) 中華五千年文物 集刊 服飾 篇 下, pp. 232-233.

에 입는 衣服이다. 이 襜褕는 大袖나 袍 위에 입고 帶를 띠었으므로 이 옷의 기장은 길었음 것이다.

周汎과 高春明은 漢魏時에 襜褕이라고 일컬었던 것을 隋唐代에 襜褕이라 했고 宋代 以後에는 背心이라 일컬었다고 하였다.²²⁾

襜褕을 襜褕의 의미로 썼는데 襜褕의 褕字는 褕字로 고쳐서 襜褕으로 써야 옳다고 생각된다. 周錫保도 襜褕의 褕字를 褕字로 쓰고 襜褕을 兩褕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襜褕은 짧고 襜褕은 襜褕보다 긴 것 같다고 하였다.²³⁾

新羅婦人의 褕는 襜褕 卽 婦人袍로서 그것은 褕이라고도 하는 婦人上衣였을 것이다. 新羅의 褕은 婦人衣服名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褕褕은 아닐 것이다.

6. 袴

三國史記 色服條에 의하면 新羅時代에 袴는 遺族에서부터 平人에 이르기까지 모든 男女가 着用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袴는 同書 新羅本紀 眞聖王條에 同王 10년에 나라의 西南地方에 赤袴를 입은 敵들이 일어났었다고 있으며 唐書 東夷 新羅에도 男子는 褐袴를 입는다고 있다.

또한 梁書 諸夷 新羅와 南史 東夷 新羅條에 其冠曰 遺子禮 襦曰 尉解 袴曰 柯半이라 있다.

袴는 新羅 男女의 基本 服飾 中의 하나이다.

袴는 「說文」에 袴, 脛衣也. 「段注」今所謂套袴也. 左右各一, 分衣兩脛, 古之所謂袴, 亦謂之褌, 亦謂之褌. 「釋名釋衣服」袴, 跨也, 兩股各 跨別也. 라고 있다.

袴는 本來 오늘날 우리가 바지라고 부르는 옷이라기 보다는 다리 싸개인 套袴형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新羅 時代의 袴는 套袴 형태의 袴였다고 보다는 窮袴 형태였을 것이다. 窮袴는 南齊書 列傳 高句麗條에 高麗 俗服窮袴라는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高句麗人이 입었던 袴였다. 窮袴는 앞뒤에 밑(襠)이 있는 袴이며 밑이 막힌 바지이다.²⁴⁾

그러므로 근래 우리나라 학자들간에 窮袴를 幅이 좁은 바지로 解析하여 왔는데 이 해석은 옳은 解析이 아니다. 바지통이 좁거나 넓은 袴도 밑은 막힌 바지일 수 있기 때문이다.

三國史記 色服條에는 男女 또는 귀천상하없이 袴라고만 보이지만 袴의 넓고 좁음이나 길고 짧음에는 男女 또는 귀천 간 또는 用途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慶州의 異次頓 供養石幢에 浮彫되어 있는 異次頓像과 斷石山 神仙寺址 石窟에 陰刻되어 있는 三人의 磨崖供養 人物圖와 天馬塚의 白樺樹皮製 笠 彩蓋板의 騎馬人物圖 등은 古新羅 服飾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데 여기에 보이는 人物들은 襦袴를 입고 있으며 이들의 袴는 廣袴이다. 바지통이 넓은 袴는 또한 경주 금령총 출토 기마 인물상 土器의 갑주 服飾에서도 볼 수 있다. 이 人物의 衣服은 武裝服飾임에도 그의 袴는 廣袴이며 高句麗 쌍영총 연도 西壁 벽화 기마 인물의 袴와 비슷하다.

또 다른 금령총 출토 기마 인물은 앞의 금령총 기마 인물과는 머리에 쓴 冠도 다르고 그가 입은 바지도 통이 좁은 것이다.

경상남도 彦陽 川前里 암각화에 보이는 人物도 통이 넓은 바지를 입었는데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特異한 것은 바지 위에 다른 천을 덧 대어 무릎받이를 입은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것은 一種의 膝袴인지도 모르겠다.

服飾禁制에 依하면 男女가 袴를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는데 女子는 袴를 裳 밑에 착용하였을 것이다.

7. 裳

新羅 婦人이 裳을 입었다는 것은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이 禁制에 의하면 新羅 婦人은 表裳과 內裳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新羅 婦人의 裳에 대하여 論하기 前에 먼저 興德王 服飾禁制의 裳에 대한 禁制를 편의상 表裳과 內裳으로 나누어 각 항 처음에 제시하고 그 다음에 논의로 들어가고자 한다.

22) 周汎, 高春明, 中國歷代 婦女妝飾, 1988, p. 219.

23)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1983, p. 230.

24) 字類註釋.

1) 表 裳

眞骨女 禁制 없음

六頭品女 禁副縹錦羅 縹羅 野草羅 金銀泥 縹縹

五頭品女 禁副縹錦 野草羅 縹羅 金銀泥 縹縹

四頭品女 只用縹 絹已下

平人女 只用 絹已下

2) 內 裳

眞骨女 禁制 없음

六頭品女 禁副縹錦羅 野草羅

五頭品女 禁副縹錦 野草羅 金銀泥 縹縹

四頭品女 無內裳

平人女 禁制 없음

新羅 時代의 女子가 裳을 입었다는 것은 三國 時代에도 女子가 裳을 입었으므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新羅 婦人은 表裳과 內裳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眞骨女의 表裳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렇다고 眞骨女가 表裳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眞骨女는 表裳의 재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禁制 이전과 같이 表裳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反面에 內裳에 있어서 四頭品女는 無內裳이라고 明示되어 있어 平人女도 內裳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內裳에 대한 禁制에 의거하여 보면 이 시대까지 內裳은 모든 婦人이 반드시 입었던 衣服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지금으로부터 몇 십년 전까지도 보통 여자들이 단속곳 위에 치마를 입고 속치마를 입지 않았던 것과 비슷하다. 新羅時代에 婦人이 內裳을 입는다는 것은 五頭品 以上과 四頭品 以下 婦人 계급과 품계 구별의 표시가 되기도 한 것이 발견된다.

六頭品女와 五頭品女 表裳에 사용이 禁止된 옷감은 五頭品女에게 六頭品女에게 禁止된 羅가 빠졌다. 이것은 五頭品女에게는 羅의 사용을 허용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五頭品女에게 羅가 빠진 것은 기록상의 오류일 것이다. 이 사실을 제외하고는 六頭品女와 五頭品

女 表裳에 그 사용이 금지된 옷감과 재료는 同一하다.

表裳에서와 같이 內裳에서도 眞骨女의 內裳에 대한 禁制는 없다. 眞骨女는 內裳도 옷감 종류의 제제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六頭品女 內裳의 禁制 項目을 살펴보면 表裳의 禁制보다 內裳의 禁制 사항이 오히려 적다. 卽 表裳에 그 사용이 禁止된 縹羅, 金銀泥, 縹縹이 內裳의 禁止 조항에는 없다. 그렇다고 表裳에 사용하자 못하도록 한 직물이나 재료를 內裳에는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이것도 기록의 누락이거나 미비한 사항일 것으로 해석된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表裳과 內裳의 옷감이나 재료는 두 가지 옷의 用途가 겹쳐 보이는 것과 안에 입혀서 보이지 않는 것과의 차이에 비하여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新羅 婦人의 치마는 길이가 길었을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치마 모양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치마길이를 짐작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

金東旭은 興德王 당시 新羅의 裳은 細摺裙으로 서 길이가 긴 것일 것이라 추측하였다²⁵⁾.

柳嘉卿도 당시의 裳을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것 같이 길이가 길고 폭이 넓으며 땅에 끌릴 정도이며 허리에 주름이 있고 裾端에는 一種의 襟을 붙인 三國時代의 裳 그대로 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²⁶⁾.

그러나 新羅服制는 이미 眞德王 2年(648 A. D.) 奎濬秋가 入唐하여 新羅의 章服을 中華制로 따를 것을 講하여 허락을 받고 돌아온 그 다음 해인 眞德王 3年에 中朝衣冠을 입기 시작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文武王 4年(664 A. D.) 王은 婦人들의 衣服도 中朝衣裳으로 할 것을 下敎하였다. 興德王 服飾禁制는 興德王 9年(834 A. D.)에 내려졌으므로 이미 文武王 4年으로부터 170년이 넘게 흐른 뒤였으므로 新羅 婦人服도 唐化된지 오래였을 것이기 때문에 新羅 婦人의 裳도 여러 시각 자료에서 唐代 婦人의 다양한 치마 형태와 장식 사용 방법 등을 여러 가지 시각자료에서 발

25)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 1979, pp. 114-115.

26) 柳嘉卿, 한국복식사연구, 1980, p. 92.

견할 수 있는 것같이 다양하였고 꼭 한 가지 형태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치마는 주름있는 치마는 물론이고 gored skirt 형태의 치마도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III. 結 論

이상과 같이 三國史記 色服에 나타나는 新羅 衣服名에 관한 논의에서 그 결과를 종합하고 요약하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色服에 나타나는 新羅의 表衣란 말은 겉옷으로서 袍類일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新羅의 表衣란 말은 禮服用이었었는지 常服用이었었는지 또는 平居 燕息服의 表衣였었는지 分明하지 않으므로 袍의 形制가 어떤 것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따라서 男女가 同一形制의 表衣를 입었었는지 다른 形制의 것을 사용하였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여 볼 수 있다.

眞骨大等에서부터 平人에 이르기까지의 男子 머리쓰개가 幘頭一色이고 靴가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男子의 表衣는 常服의 表衣라고 해석되었다. 그렇다면 男子의 表衣도 唐制를 따랐을 것이므로 그것은 國領이었을 것이다.

만약 新羅의 表衣가 平居 燕居服의 表衣였었다면 그것은 國制를 여전히 사용하였었을 것이다. 이때의 男子의 表衣는 褐이었고 女子의 表衣는 長襦였을 것이다.

表衣의 재료 사용에 있어서 眞骨大等과 眞骨女는 동일하게 麤縑錦羅를 禁하였고 男女 間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六頭品 以下의 男女에게는 表衣 材料에 男女 間의 차이가 있었다. 女子가 男子보다 좀 더 나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五頭品, 四頭品 平人 男子는 布 한 가지만을 表衣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그들은 겨울용 表衣에도 布 卽 麻布 한 가지만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半臂는 唐 服制가 新羅에 流入되어 新羅에서 上流階級の 男女衣服으로 사용되었다. 眞骨大等부터 四頭品 男子와 眞骨女부터 四頭品女까지가 半臂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新羅의 半臂가 어떤 형태의 것이 있었는지 한 가지 형태

만 있었는지, 또는 여러 모양의 것이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확실한 사실은 新羅의 半臂는 上下 卽 有骨品者 이상과 無品者 사이를 구별 짓는 옷이었다는 것이다. 즉 新羅의 半臂는 계급 상징의 뚜렷한 표시가 되는 옷이었다.

新羅의 內衣는 表衣의 內衣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男子와 女子의 表衣가 國制로서 同制였었다면 內衣도 男女 것이 同制였을 것이다. 內衣는 袍의 받침옷으로서 袍類에 속하지만 表衣의 袍보다는 소매가 좁고 길이도 表衣보다 짧은 것이었을 것이다. 表衣의 袍가 唐制를 따른 것이었는지 國俗을 따른 것이었던지간에 新羅의 內衣는 소위 唐代에 襖子라고 불렀던 옷으로 해석된다.

新羅의 短衣는 長衣와 對比되는 말로서 自膝 以上에 닿는 소위 襦라고 해석된다. 三國史記 色服에는 短衣란 말이 六頭品부터 四頭品女 服飾만 나타나지만 短衣에 대한 禁制가 이들에게만 내려진 것이었다고 해석되므로 短衣는 新羅의 모든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라 믿어진다.

褙는 唐 婦人服 背子에서 유래된 옷으로서 소매는 衫보다 짧고 몸체는 衫과 같고 大袖인 外衣이다. 卽 褙子는 後代의 披風으로 現代語로는 外套類였던 것이다.

新羅婦人의 襦는 唐代 婦人服 襦襜에서 유래된 옷으로 해석된다. 襦襜은 婦人袍로서 褙이라고도 불렀던 衣服이며 本來는 羅가 주로 사용되었던 의복이었다.

褙와 襦는 唐에서 由來된 衣服으로서 新羅에서는 品階를 가지고 있었던 女子 이상만 입었다. 따라서 이 옷들은 新羅 上流階級 女子의 사회적 계급과 신분을 下流層과 구별하고 차별하는 수단으로 쓰인 옷이다. 이 옷들은 높은 階級 귀한 신분이란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袴는 男女共通으로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女子는 囊을 입었는데 內囊을 입었다. 그러나 四頭品女는 無內囊으로 나타났다. 五頭品 以上의 女子만 內囊 착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參考文獻

嘉禮都監 儀軌
廣解 大玉篇

-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서울:韓國文化研究院, 1963.
-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亞細亞出版社, 1979.
- 金富弼, 三國史記, 民族文化推進黨刊.
- 金富弼, 金鍾權 譯, 三國史記, 서울:大洋書籍, 1972.
- 김부식,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옮김, 北譯三國史記, 서울:신서원, 1959.
- 김부식,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서울:울유문화사 1983. 1997 개정판.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 三國史記, 서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金英淑 編, 韓國服飾史辭典, 서울:민문庫, 1988.
- 尙方定例
-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0.
- 李喜煥 纂, 物譜.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白楊堂, 1947.
-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 品”, 韓國史 學論叢, 1960, pp. 95-104.
-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세종기념사업회, 1974.
- 李宰, 四禮便覽.
才物譜.
- 홍매경, 홍무경, 조선의복, 혼인제도의 연구, 서울, 乙酉文化社, 1948.
- 康熙字典
- 高承, 事物紀原集類, 台北:新興書局 中華民國 58 年.
- 王字清, 韓國服裝史綱, 台北:中華大典編印會, 1969.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商務印書館, 1964.
-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人 妝飾, 台北:南天書局, 1988.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丹青, 1983.
- 中文大辭典
-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服飾, 台北: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中華民國 75 年.
- 張其昀 監修, 程光裕, 徐聖謨 主編, 中國歷史 地圖 上下, 台北:中國文化大學 出版部, 1980.
- 太平御覽, 台灣:商務印書館.
-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 東京:東洋文庫, 昭和 45.
- 朝鮮總督府 中樞院, 高麗以前의 風俗關係 資料 撮要,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6年.